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800호 2021. 4. 20.(화)

거창 후훈 거창

선결	기관의 장

조 례

제2613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고 시

제2021-6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10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 8
제2021-69호 도로명주소 고시 ····· 10

공 고

제2021-613호「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12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21년 4월 20일

거창군 조례 제2633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월 3만원”을 “월 7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만원”을 “50만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중 생년월일란에 “(남/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②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일반 종량제봉투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2. 사망위로금: 30만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보훈명예수당: 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수당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나.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2. 사망위로금: 50만원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제15조(명예수당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삭 제>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증액과 종량제봉투 예산 지원

나. 관련 조문: 제7조(보훈단체 등 지원), 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714	714	714	714	714	3,570

3. 관련 의견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지급과 종량제봉투 예산지원을 통한 예우 강화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672,000천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5,000천원
3. 종량제봉투 지원: 17,0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강 준 석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21-35

제출연월일	2021. 3. 2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증액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지원사업 변경(안 제7조)

1) (현행) 종량제봉투 수수료 면제

2) (변경) 종량제봉투 지원

나.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증액(안 제10조)

1)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 월 7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50만원

다. 법령 재기재·위배소지 등 정비(안 제10조·제15조·제17조)

1) 군수의 예산편성권 침해소지 정비: 지급한다⇒지급할 수 있다

2) 법령 위임없는 권리제한 및 법령 재기재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 392백만원 확보(322백만원 추가확보 예정)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간단축)

가) 예고기간: 2021. 3. 11.~3. 2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서식)

거창군 고시 제2021 - 6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10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경상남도고시-115호(1979.5.24.)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10호선)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고시합니다.

2021. 4. 20.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비고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10호선	가조	수월	소로	3	110	142.0	6.0	867	가조면 수월리 466-5 ~ 가조면 수월리 526-9	경고-115 ('79.5.24)	

2.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편입용지조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 소로 3-110호선								
계					867			
1	〃	1370-24	제	67	6		국(국토교통부)	
2	가조면 수월리	1370-23	천	70	20		국(국토교통부)	
3	〃	466-5	천	185	35		이*조	
4	〃	466-7	임	112	38		거창군	
5	〃	470-4	답	44	27		거창군	
6	〃	468-2	대	279	84		거창군	
7	〃	469-1	전	38	38		거창군	
8	〃	1376	도	11,405	105		국(국토교통부)	
9	〃	562-3	도	44	15		거창군	
10	〃	562-2	대	518	25		거창군	
11	〃	561-6	전	213	81		거창군	
12	〃	561-9	도	81	18		거창군	
13	〃	561-5	대	169	7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561-1	김*복	
14	〃	561-3	도	39	7	527	박*준 / 이*영 김*석	
15	〃	560-1	도	5	5		거창군	
16	〃	560-2	대	100	100		거창군	
17	〃	557-1	대	380	9		거창군	
18	〃	556-6	대	165	86		거창군	
19	〃	556-3	도	8	8		거창군	
20	〃	556-2	도	6	6		거창군	
21	〃	556-4	대	429	34		거창군	
22	〃	526-11	도	146	12		거창군	
23	〃	526-9	임	313	101		거창군	

5.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고시 제2021 - 6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4. 20.

거 창 군 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18-16 등 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이동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996-4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신1길 118-16	20210420	20091228	고학의 새로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첫번째 도로	건물번호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0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34-4	20210420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1517-3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묘적사길 31-12	20210420	20180502	묘적사 명칭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거창군 공고 제2021-613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합리한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사용료·대부료 5%이상 증가분 감액율 조정(100분의 70 → 100분의 100)
- 일반재산 수의계약 대부 규정 신설(수의매각 규정 준용)
- 정수관리대상물품 지정 변경(행안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
-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 생산·전시·판매(100분의 30)

· 청년친화강소기업 사용·수익 등(100분의 50)

·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100분의 100)

나. 불합리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 삭제
- 대상과 내용이 불명확한 납부유예 규정 삭제

4. 예고기간 : 2021. 4. 20.(화) ~ 5. 10.(월)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1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263, 팩스 055-940-3219, 이메일 ywj3289@korea.kr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재산관리담당【☎(055)940-32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4. 삭제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항을 삭제한다.

③ 삭제

제29조(대부료의 조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4항, 제5항제3호, 제6항(신설), 제7항(신설), 제8항,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나목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및 대부 받은 일반재산의 사용·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액할 수 있다.

⑧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6항ㆍ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제8항ㆍ제9항ㆍ제10항ㆍ제11항으로 한다.

제32조의 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53조(물품의 관리)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별표5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2,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76호, 2020. 12. 22)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생략) 1.~5. (생략) ③ (생략) 1.~3. (생략)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삭제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고지한 대부료 또는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제
제29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29조(사용료·대부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사용료·대부료----------사용료·대부료----------100분의 100---.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7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⑤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	⑤ 영 제35조제2항제2호가·나목에 따른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와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⑦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및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사용·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⑧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부료의 감경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⑦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광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⑨ (현행과 같음)
⑧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⑩ (현행과 같음)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른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 · 형태 ·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53조(물품의 관리)	제53조(물품의 관리)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별표5와 같다. (신설)

[별표 5]

정수관리대상물품(제53조 관련)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5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u>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u>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대부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대부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定數)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 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⑨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16조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

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16. 7. 12.>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삭제 <2020. 12. 22.>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7. 20.>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29조제1항제28호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34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35조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이하 "물품 수급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야 하며, 해당 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려는 예정 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의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7. 7.,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물품은 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定數)를 정한 물품(이하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57조제3항